

#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839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5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 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	심사경과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	2208328	윤준병의원	'25.02.21.	-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 (’25.4.23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-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3.24.) 상정, 축조심사
	2208658	박성훈의원	'25.03.05.	-제434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4.14.) 상정, 축조심사
	2211495	윤준병의원	'25.07.16.	-제428회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’25.8.26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-제433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3.24.) 상정, 축조심사 -제434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4.14.) 상정, 축조심사

가. 제434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4.14.)

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

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3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6.4.23.)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.9kg에서 2024년 55.8kg으로 감소하였고,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.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,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협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제조용 쌀, 보리,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·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,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

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,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, 보리,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·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4조).

나.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,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(안 제28조 및 제36조)

##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, 보리,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·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

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36조제1항제3호 중 “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”을 “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”을 “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28조(표시변경 등의 명령) ①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</p>	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, 보리, 밀 등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·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8조(표시변경 등의 명령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6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</p>

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

4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2.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위반한 자료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위반한 자료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---